

# 지식재산관리 및 기술이전 규정

제정 2008. 6.26      개정 2016. 5. 4  
개정 2010. 1. 1      개정 2017. 9. 1  
개정 2021. 8. 1      개정 2026. 3.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구성원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구성원이 직무에 관한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및 기술정보 등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9.1)
2.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구성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1.8.1)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8.1)
  - 가. 제2호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나. 제5조에 의해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다. 제6조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구성원을 말한다.
5. “대표 발명자”란 2인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직무발명신고를 한 경우 발명 지분이 가장 높은 발명자를 말한다.
6. “구성원”이란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출원유보”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8. “노하우”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9. “기술이전”이란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또는 발명을 대학 외부의 제3자에게 사용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 실시

허가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1)

10. “기술료 보상”이란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그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구성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개정: 2021.8.1)
11. “통상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전용 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13. “기술이전 기여자”란 기술이전전담부서 직원으로서,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 업무 전담자 또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8.1)

## 제 2 장 지식재산 관리

### 제 1 절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제3조(발명의 신고) ①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 신고서 (권리양도사항 포함)등의 서류를 대학의 특허기술이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속 부서장(학과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대표 발명자의 소속 부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개정: 2026. 3. 1.)

1. (삭제: 2021.8.1)
2. (삭제: 2021.8.1)
3. (삭제: 2021.8.1)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제5조에 의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한 후 권리를 승계할 경우 출원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

제4조(권리의 승계) ①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산학협력단이 가진다.

② 구성원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구성원이 갖는 권리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가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다. 제5조에 의한 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이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8.1)

제5조(승계여부의 통지) 산학협력단이 제3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

제6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시점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제5조에 의한 기간이 지난 뒤에 권리의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발명을 한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 통보 및 보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23조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한 발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산학협력단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신청한 발명자에게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 신청을 한 발명자는 제3항에 의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자유발명을 소유한 자는 제2조 제3항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1.8.1)

② 자유발명을 소유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 양도 표시 의사가 포함된 서류 및 발명 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8.1)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

④ 제1항에 의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권리는 직무발명에 준하여 취급한다. (개정: 2021.8.1)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삭제: 2017.9.1.)

## 제 2 절 출원 및 비용부담

제10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을 출원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2017.9.1)

③ 정부 과제에 의한 발명 또는 산업체(POSCO 포함) 과제에 의한 발명은 해당 과제 규정 또는 협약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과제 규정 또는 협약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개정: 2016.5.4.)(개정: 2021.8.1)

④ (개정: 2010.1.1.)(삭제: 2016.5.4.)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출원의 취하, 포기 및 권리의 유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그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7.9.1.) (개정: 2021.8.1)

제11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

1.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출원의 경우 (개정: 2017.9.1)

가. 연구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출원 등에 소요되는 추가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연구책임자별 특허과제에서 집행한다.

나.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선정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8.1)

다. 가목 및 나목에서 비용부담이 불구하고 기타 재원을 활용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신설:2021.8.1.)

2. BK 등 지식재산관련 비용 별도 관리 규정에 의한 출원의 경우

가. 국내·외 출원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해당 사업에서 비용처리 한다.

나. 해외 출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다. 사업 종료시 해당 특허들은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3. 산업체 및 POSCO 과제의 경우 산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의 부담

이 있을 경우 심사 후 결정을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규정을 따른다.

4. (삭제: 2021.8.1)

② (삭제: 2017.9.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제 3 장 기술 이전

#### 제 1 절 기술 이전

제12조(기술이전 업무의 위탁운영) (삭제: 2021.8.1)

제13조(기술 가치 평가)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상대방과 기술 가치에 대해 합의가 곤란한 경우 그 가치 산정을 위하여 외부의 가치평가 시스템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기술가치평가를 받는다. 다만, 신기술로 기술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노하우인 경우는 발명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

제14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발명자 등의 협조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 및 기술개발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권을 우선 하여 할 수 있다.

④ 연구수행 계약 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5조(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협상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이전 희망업체 요청자료) 기술이전 추진 시에는 기술이전 희망 업체에 다음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4.)

1. 기술이전 요청 문서
2. 사업자 등록증
3. 업체 일반 현황
4. 기술 이전계약 희망 조건
5. 기타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7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을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해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경상기술료의 수수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본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을 이전 받은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 기간) ①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기간은 실시허가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 이전할 특허권의 잔여 권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8.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기술이전 상대방과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이전된 기술의 상용화가 타당한 사유없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신설: 2021.8.1)

③ 노하우 계약기간은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④ 특허, 노하우가 병용된 기술이전의 경우 계약기간은 전체 기술 중 특허, 노하우의 비중 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0조(기술이전 담당교수) 기술이전 담당교수는 대학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술의 기술이전을 책임진다.

## 제 2 절 기술료 징수

제21조(기술료의 산정) ① 선급 기술료는 제13조에 따른 기술 가치를 기준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필요경비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개정: 2021.8.1)

②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③ 경상기술료의 산출대상 기간 및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노하우 등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준하여 결정하되 그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선급기술료의 경우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하고, 경상기술료의 경우 산출 대상기간 및 주기는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료는 현금수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의해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지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해당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 3 절 기술료 보상

제23조(기술료의 처리) ① 대학은 기술 이전을 통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 연구자, 기술이전 기여자 등에게 기술료 일부를 보상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21.8.1)

② (삭제: 2016.5.4.)

③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술료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발명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에 주소 및 연락처를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의 상속인이 지급받은 기술료 보상금은 그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술료 배분) ①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에 대한 배분 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8.1)

② 기술료를 주식으로 받을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현금화한 이후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1.8.1)

③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권리 양도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사업을 착수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6.5.4.)

제25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삭제: 2016.5.4.)

### 제 4 장 보 칙(신설: 2017.9.1.)

제2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

할 의무를 가진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구성원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도 본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